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01
----------	------

제출일자 : 2020. 12. 4.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부동산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종 심의하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회의의 비공표)를 삭제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0. 10. 20. ~ 11. 9.)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 (6) 부서합의 : 합의되었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 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삭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회의록의 공개)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2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를 위한 심의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3.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5.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해당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위한 심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를 위한 심의
3.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를 위한 심의

④ 법 제27조의2 단서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란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